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7월 31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8년 8월 6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3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8년 8월 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가.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평창군에서 수행한 정책연구결과물의 공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 법령 위임조례 정비요청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정책연구결과물의 공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적용범위(안 제3조)
 - 평창군이 추진하는 모든 용역
 - 적용제외 대상 규정
- 공개방법(안 제4조)
 - 정책연구 용역 종료 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본 조례안은 평창군이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조례제정을 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
안 제4조에서는 연구결과물 공개
안 제5조에서는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 법령 위임조례 정비요청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1부.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평창군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 · 전산 · 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공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